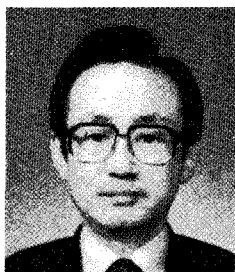


WTO체제 하에서의 경쟁정책 운용 방향



천윤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서언

UR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은 관세·비관세 장벽 등 전통적인 국경간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지만 현실은 이와 같은 국경에서의 무역장벽 제거가 바로 국제무역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반경쟁적 기업관행, 각종 투자제한 조치, 위생·환경 규제 등 국경 내에서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아직 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내 장벽들은 UR 타결 이전만 하더라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UR 타결로 국경장벽이 제거되어 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UR협정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교역장벽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규정하고 있거나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반경쟁적 기업관행은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조건의 국제적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UR협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국제경쟁 정책협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OECD 등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경쟁정책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된 데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이 무역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협정도 UR협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UR협정 내용에는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UR협정의 내용중 경쟁정책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나 향후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방향을 예측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UR협정 내용중 경쟁정책과 관련된 규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새로운 경쟁정책질서를 형성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개관한 뒤에 이에 맞추어 공정거래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UR협정의 경쟁정책 관련 규정

경쟁정책은 협의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개선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참여

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치유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정의에 입각한 경쟁정책의 대상 범위는 카르텔, 지역 제한·배타 조건부 거래 등 수직제한 협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규제, 합병규제 등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광의로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완화, 민영화 등과 같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정부의 정책까지도 포함하여 보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경쟁정책 문제를 국제적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쟁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OECD에서의 경쟁정책 논의도 협의의 경쟁정책 이슈 이외에 민영화·규제완화 문제까지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UR협정 내용중 경쟁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들은 보조금 협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관련 규정, 지역 재산권 협정, 투자관련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는 수출 성과나 수입대체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선진국은 3년 이내에, 개도국은 5~8년 이내에 각각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입 활동과 직접적으로는 연동되지 않은 기타 보조금은 허용가능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다른 나라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금지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협정에서는 동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이 외의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어떠한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도 금지하고 있다. WTO 협정의 발효일 당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상기의 조치들은 WTO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 관련규정에서는 명료하고 객관적인 덤핑마진 산정기준 제시, 수입시장점유율 등에 의한 최소 허용기준 설정, 5년의 자동소멸시효의 설정 등을 통해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관련협정(TRIPs)에서는 불합리한 무역제한을 초래하거나 국제적 기술 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적 재산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각 회원국이 지적 재산권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TRIMs)에서는 외국인기업의 현지투자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거래관행에 관한 규범을 보완하는 문제를 5년 이내에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UR협정은 기본적으로 국경에서의 정부에 의한 무역제한 조치를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을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쟁정책 문제의 디지털화 및 쌍무 통상 이슈화 동향

경쟁정책 관련 국제협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처음 국제적으로 거론된 것은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해 1947~48년에 입안되었던 Habana헌장까지 소급되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견해 차이로 빛을 보지 못했다. 그 후 UNCTAD에서는 「제한적 거래관행에 관한 규제를 위한 다자간 원칙과 규범」(SET)을 1980년에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동협정은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협정 이행을 위한 강제집행력이 결여되어 있어 국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카르텔, 수직계열관계 등 국내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이 국제교역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보다 강력한 국제협정 체결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내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다자주의·지역주의·쌍무주의 등 여러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다자차원에서는 각국의 서로 다른 경쟁제도와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협정 제정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특히 OECD에서는 차기 라운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문제를 환경·기술·노동 문제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국경간 무역장벽 해소로 유효한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국경 내부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이 국제 무역의 저해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OECD에서는 91년부터 경쟁정책위원회와 무역위원회가 합동으로 양정책간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발생되는 이슈들을 발굴하여 양정책간의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양정책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상호 보완적인 순기능적인 이슈와 상충적인 역기능적인 이슈로 구별할 수 있는데, 역기능적인 이슈는 다시 경쟁정책 이슈가 무역저해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와 무역정책 이슈가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경쟁제한적인 수평협정, 수직제한, 기업결합, 수출카르텔 등은 전자에 속하는 이슈이다. 수·출입 수량 규제, 비판세장벽, 세이프가드, 수출자율 규제(VER), 수입증가협정(VIE) 등은 후자에 속하는 이슈로 분류된다. 그리고 반덤핑조치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충돌적인 이슈로 분류된다.

그동안 OECD에서 논의되어온 각 이슈별 주요 규범화 방향은 담합에 의한 가격고정·수량제한 등의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규제, 당연위법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등 수직제한에 대한 합리적 규제, 통상측면에서 수입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남용 경향이 있는 반덤핑조치에 경쟁법에 입각한 약탈적 개념을 도입, 전력·운수·통신·금융 등 전통적으로 경쟁법적용이 제외되어온 공공 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법적용 확대, 사기업간의 수출자율규제(VER)·수입증대협정(VIE) 등 회색지대조치의 철폐, 기업결합의 규제강화 그리

고 경쟁법 위반 기업의 관련 정보 상호 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조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수직제한에 대해서는 무역 정책당국자들은 외국업체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모든 수직제한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쟁정책당국자들은 영업지역 제한, 배타적 거래 협정 등 가격 제한을 제외한 수직 제한은 경쟁저해 효과 뿐만 아니라 경쟁촉진 효과도 가지므로 사안별로 합리원칙에 따라 위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자차원의 규범화 논의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선진국들간의 입장 차이, 무역정책당국과 경쟁정책당국간의 시각 차이 등으로 인해 OECD 내에서 선진국간의 합의가 형성되기까지는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OECD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되더라도 경쟁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을 우선시하는 개도국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WTO 차원에서 경쟁라운드가 본격화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 등은 현단계에서 다자적 규범 제정에 주력하기보다 경쟁정책 이슈를 통상 문제로 부각시켜 301조 발동 등을 통해 쌍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WTO/TRIMs 협정에서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경쟁정책 관련조문의 수정 작업 검토를 명시하고 있고, 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어 WTO 차원의 다자규범화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쌍무차원에서는 미국이 94년 12월 UR이행법 제정을 통해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에 반경쟁적 거래관행에 관한 독립된 Section을 신설하고 코닥사의 일본필름 시장에 대한 301조 제소에서 보듯이 최근에 미업계가 외국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 301조 발동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미국 정부가 이에 적극 호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

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제적 기업활동에 대한 독점금지 시행지침」의 개정 등을 통해 자국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의 수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에서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쌍무간 협의체널을 통해 주요 교역국의 경쟁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미·일 구조조정 협의 과정에서는 계열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영역 축소, 과징금 인상, 형사고발 제도의 적극활용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한·미 경제협력대화기구회의(DEC)에서는 국제계약 신고제도의 개선, 경품·할인특매 등 판매촉진활동 규제의 완화, 카르텔에 대한 규제강화, TV와 라디오 광고시간 활용기회의 확대, 사업자단체의 반경쟁적 활동규제 등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95. 4. 발표한 NTE 보고서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권 폐지, 각종 사업자 단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의 미흡, 공정거래법 집행의 불철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슈퍼301조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년 9월에 진행된 한·미 자동차협상에서도 경쟁제한적인 광고 배정 관행이 거론된 바 있다.

EU 또한 지금까지 로마조약을 통해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공통의 경쟁규범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EU 역내에 영향을 미치는 역외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역외국가와의 쌍무협정 및 복수 국가 간 국제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 및 쌍무차원에서의 논의 이외에도 APEC 등 지역주의차원에서도 경쟁정책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APEC에서는 역내국가간에 경쟁정책분야에 대한 상호협조와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APEC의 경우 역내국가들간에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고 회원국간 경쟁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차

이가 많아 규범화 문제 등 고차원적인 협력보다는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초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다자간 협의체로써의 APEC의 한계를 인식, 당분간은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역내회원국들과의 쌍무협정체결에 보다 치중할 전망이다.

WTO체제 하의 경쟁정책 운용 방향

위와 같은 국제경제질서 형성과 재편 움직임은 이미 공업화를 이루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공업화를 이루하지 못한 개도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정착이 되지 못한 단계에 있어 UR협정의 이행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의 결론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UR협정의 경우 보조금 관련규정에서 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각종 산업지원제도의 철폐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동협정에서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각종 형태의 회색지대조치를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과의 각종 수출입협정, 수입선다변화 제도 등의 철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더하여 경쟁정책문제의 국제규범화가 OECD 등에서의 논의 방향대로 추진되고 경쟁정책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통상공세가 강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보다 클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르텔 허용 범위를 축소할 경우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던 기술개발·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산업정책상의 대응 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시장개방 가속화 상황에 국내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유통산업 등 취약한 국내시장이 외국업체에게 잠식될 수도 있다. 반면에

반덤핑 규제강화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상품의 수출 신장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과점 시장구조의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금융·정부 규제 분야의 경쟁력 제고, 유통구조의 개선 등 대외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산업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내지 정비하고 경쟁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심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운용방향을 수정하는 등의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 중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각종 경쟁관련 제도의 개선

국제협상에서 논의되는 주요 경쟁정책 이슈중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거나 제도선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응 능력을 고려하여 수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OECD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카르텔, 수직제한, 기업결합, 반덤핑 등의 분야는 주요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라고 생각된다.

카르텔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사유를 축소하고 위반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 및 고발제도의 적극활용을 통해 처벌을 엄격히 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외국업체의 국내유통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전속대리점 계약에 의한 가격제한·판매지역제한·베타 조건부 거래구속 등도 통상 문제화 소지가 크므로 관련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금융시장개방과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기업 결합의 경우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클 것이므로 기업결합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하여 그 운용을 활성화하고 지적 재산권의 행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용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 발동시 경쟁당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역당국과 경쟁당국간의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VER·VIE 등 회색지대조치와 수입선 다변화 제도도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경쟁제한적인 법령 정비

산업정책차원에서 특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진입장벽·가격규제·사업영역 규제 등의 경쟁제한적인 법령과 제도는 국제규범의 수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회원 가입강제·탈퇴 제한 등의 경쟁제한 행위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어온 공공분야 및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OECD 회원국들의 경우처럼 민영화 등 규제완화와 아울러 경쟁법적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원리의 적용확대만이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완화도 기업의 애로요인을 제거해 주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진입장벽 제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정책 또한 기초기술 개발, 인력개발, 지역개발 등 산업전반에 공통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통상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쌍무협상보다는 다자주의가 전략상 우리에게 유리하므로 경쟁정책 문제의 국제협상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접근을 주장하여야 한다. 경쟁정책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OECD 등 다자간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규범형성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상호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쌍무협상에서는 다자간 논의동향을 고려하여 우리 입장을 수립하되, 일방주의 대신에 상호주의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쌍무간에 있어서는 미국이 주로 경쟁정책 이슈를 통상 이슈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NTE보고서 검토와 아울러 미국의 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의 역외적용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쟁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법집행을 철저히 하여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독금법의 역외적용 문제가 현실로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역외적용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외국의 대응동향을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미국등 선진국들에게 반덤핑제도의 경쟁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선진국들의 자율적 수출제한협정(VER) 요구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논의가 단순히 경쟁법 운용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 금융, 유통, 통신, 해운, 정부규제완화 등 경제전반에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대책기구를 설치하여 국제회의 참가 입장 마련, 산업·무역 정책과 경쟁정책간의 의견조정, 쌍무차원의 협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 직면한 외국기업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쌍무협상시 해결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정책 문제의 국제적 논의가 고도로 전문적인 개념과 논리의 전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논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우리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 정책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는 노력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경쟁법 집행의 철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95년 3월 미국의 국별 무역 장벽보고서(NTE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법집행이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94년 12월 제정된 UR 이행법은 외국 정부당국이 자국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묵인하여 미국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내부의 경쟁정책 문제로 인한 미국의 301조 보복조치를 예방하려면 기업대로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경쟁법집행을 철저히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불공정관행중 경쟁제한 효과가 큰 내부거래,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집행을 엄격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경쟁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의 취약성과 공정거래 제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데도 그 원인이 크므로 법집행 강화노력과 함께 제도 보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요소의 배분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산업을 육성·보호·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 이 과정에서 경쟁정책은 산업정책의 일부 영역으로 작용할 따름이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양적인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 왔지만 정부가 경제의 각 산업부문에 규제, 보호,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각종 산업지원정책의 철폐가 불가피한 오늘의 상황에서는 우

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에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부처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과 기능도 보강하여야 한다. 94년 12월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지만 지금과 같은 체제와 위상으로는 경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부처 내에서의 위상도 강화함은 물론 표시·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단속에 있어서 효율성·일관성·전문성을 감안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소비자보호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 경쟁정책 관련 국제동향의 홍보 강화

국제경쟁정책규범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따라야 할 국제적 룰을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이 국제적 동향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설명회 개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국제동향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WTO체제 출범과 함께 경쟁정책 문제가 새로운 국제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배경과 UR협정의 경쟁정책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움직임, 그리고 경쟁정책 문제를 통상 이슈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경쟁정책, 나아가서는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우리 내부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갈수록 거세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

쟁정책 분야의 국제협정을 제정하기 위한 Competition Round는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정책 문제가 생무간이나 다자간에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다자간 규범화에 대해서는 UR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그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국제경쟁정책협정이 완성될 경우 세계경제는 경쟁조건이 국제적으로 평준화되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이는 경쟁풍토의 조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경제운용의 기조가 과거 정부의 규제·보호·간보 위주에서 민간의 자율·창의·경쟁을 촉진하는 패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쟁촉진적인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의 주무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산업을 직접 관掌하는 주무부처에서도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진입장벽 등을 능동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등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기업경영을 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거세게 불어닥칠 경쟁라운드의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발족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 등 업계와 정부와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민간 단체의 필요성이 업계와 정부에서 제기되어 94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주요 기업체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 설립 발기위원회를 구성, 11월 23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한국공정경쟁협회는 회원 총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11월 28일 현판식을 한 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실장, 예산실장,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이양순씨가 임명되었고, 비상임국이사에는 김정태(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황정현(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심현영(현대그룹 기획조정실장), 서형석(주식회사 대우 기획조정실장), 현명관(삼성그룹 비서실 실장), 이문호(LG그룹 회장실 사장, 1994. 12. 21 임원 개선), 손길승(선흥그룹 경영기획실 사장), 김은상(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원택(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씨, 사무국장에는 김영환씨가 임명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1) 공정경쟁 관련 출판 및 홍보사업

- 공정거래제도 해설집 발간
- 공정거래 심결집 발간 · 배포
- 기타 각종 자료 발간

(2)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이해 제고

- 교육 연수(강좌, 설명회 등)

- 세미나 개최

- 상담사업

(3) 공정거래 관련 동향과 정보 서비스 사업

- 정보지 계간 「공정경쟁」 발간 · 배포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제도와 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정보 제공

(4)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제정지원
- 프로그램의 보급 사업

(5) 회원의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제도 개선 사업

-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건의
- 외국의 공정거래제도 동향 연구

(6) 공정경쟁 제약 및 규제의 완화

- 경쟁 추진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
- 경쟁 라운드에의 사전 대비

95년도 주요 사업

(1) 공정거래법 제정 내용과 운용 방향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 및 연수

(2) 업종별 거래 행태의 조사와 업계의 공정거래 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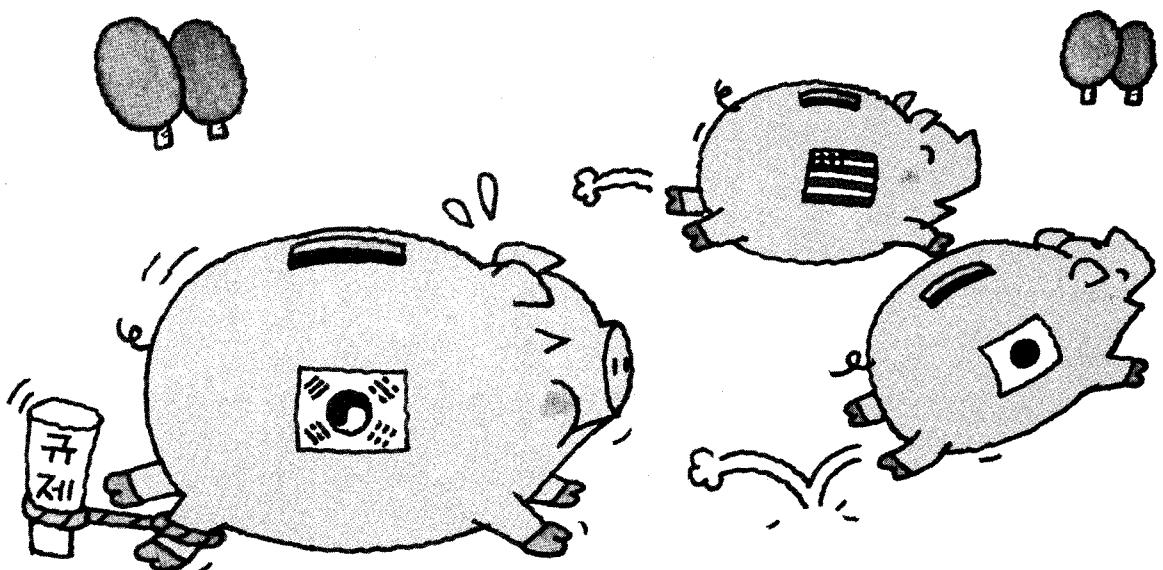
(3)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논문, 심결의 내용 분석, 경쟁정책에 관한 학계 · 재계 등 각계의 논단 및 해외 동향 등을 수록한 「공정경쟁」지 4회 발간(2월, 5월, 8월, 11월)

(4) 업종별 기업체, 단체, 학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운영 평가,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5) 공정거래 관련 법규집 및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 해설집 발간

(6)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설집 발간

경쟁 정책의 최근 동향과 과제



규제 개혁의 중간 평가와 과제

유승민

경쟁제한 법령의 개선

김 용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우영호

통신시장 구조 개편과 공정경쟁 정책의 과제

조 신

병행수입 제도의 내용과 바람직한 운영 방안

이동걸